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18. 4. 24.>

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(제21조제1항관련)

(단위 : 만원)

1. 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

범 칙 행 위	해당법조문	범칙금액
가. 소형자동차정비업	법 제53조제1항 및 제79조제13호	
(1) 대형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·정비		300
(2) 중형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·정비		200
나. 자동차전문정비업		
(1) 판금·용접 및 도장행위를 수반하는 점검·정비		300
(2) (1)외의 점검·정비		150

주 : 작업범위의 위반내용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한 점검·정비로 인한 경우에는 범칙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자동차무단방치행위

(단위 : 만원)

범 칙 행 위	해당법조문	범 칙 금 액		
		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	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	
			경형·소형	중형·대형
가. 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	법 제26조제1항(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81조제8호	20	20	30
나. 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		100	100	150

3.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

(단위: 만원)

범 칙 행 위	해당법조문	범칙금액
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	법 제81조제2호	
가.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		10
나.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		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
다.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		50